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2023.4.11.)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병가·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3.4.11.)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상 결원보충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2023. 9. 4. ~ 9.15.)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제3항 또는”을 “제4항 또는”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전단 중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가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시작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③ 병가기간 중에 해당 병가와 연속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남은 병가와 휴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질병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출산휴가와 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연계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⑤ 출산휴가기간 중에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남은 출산휴가일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⑥ 육아휴직기간 중에 연속하여 출산휴가(그 출산휴가에 연계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사전 승인한 말부터 남은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일(그 출산휴가에 연계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를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를 사전 승인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2.·3. (생략)

② ~ ⑧ (생략)

제7조의4(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
43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파견(법 제40
조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파견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결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
여야 한다.

②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4
4조제1항제7호에 따라 3개월 이
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공
무원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

2.·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의4(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
----- 「국가공무원법」 제43
조제3항 -----

-----.

-----.

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
2항제1호에 따라 병가와 법 제4
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
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연
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
우에는 병가를 시작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③ 병가기간 중에 해당 병가와

<신 설>

연속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남은 병가와 휴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질병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출산휴가와 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연계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 설>

⑤ 출산휴가기간 중에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남은 출산휴가일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명하는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 설>

⑥ 육아휴직기간 중에 연속하여 출산휴가(그 출산휴가에 연계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사전 승인한 말부터 남은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일(그 출산휴가에 연계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다)를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를 사전 승인한 날부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출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원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481